##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0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 박충권 • 권영진 • 유영하

엄태영 · 김용태 · 박성훈

고동진 • 신성범 • 김정재

이종배・김성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「원자력안전법」 및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,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원자력안전법」으로 부담금의 부과·징수를 일원화하고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(제45조의2, 제45조의3 삭제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44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##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45조의2(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	<u>&lt;</u> 삭	제>			
등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					
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					
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					
호의 자(이하 "원자력관계사업					
자등"이라 한다)에게 원자력안					
전관리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					
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				
1.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					
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					
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					
제운송을 위탁받은 자					
2.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					
까지에 따른 심사・검사・교					
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					
<u>업자</u>					
② 부담금의 규모, 산정기준은					
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					
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					
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					
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					
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					
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				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		

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, 산정기준,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.

제45조의3(강제정수) ① 원자력안 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 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.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 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 수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 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 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<삭 제>